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80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 : 김 현 · 김우영 · 이해민

최민희 • 이훈기 • 박수현

정동영 · 서미화 · 박지원

이재관 · 권향엽 · 안도걸

이병진 · 양부남 · 위성곤

이정헌 • 고민정 • 박해철

허 영·김문수·이광희

한민수 · 송재봉 · 조인철

문금주 • 채현일 • 오세희

정진욱 • 김영화 • 유건영

황정아 의원(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상파 방송들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허가·재승인을 결정하

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불법방송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해 허가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7條(再許可 등) ① ~ ④ (생	第17條(再許可 등)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
	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해 허
	가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허가 유효기간
	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에 따른 재승인인 경우에도 이
	<u>와 같다.</u>